

인권정보자료실
CPh1.119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 대표발의)
병역법중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공 청 회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

2005. 3. 17

국회 국방위원회

인권정보자료실
CPh1.119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 대표발의)
병역법중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공 청 회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

2005. 3. 17

국 회 국 방 위 원 회

목 차

□ 공 청 회 개 요	1
1. 목 적	3
2. 안 건	3
3. 일 시	3
4. 장 소	3
5. 진술인 명단(6인)	3
6. 진행순서	4
7. 진행방식	4
□ 진 술 요 지	5
○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7
○ 김병렬(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29
○ 홍영일(양심적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41
○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61
○ 오태양((사)좋은벗들 상임간사)	71
※ 현재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 수감중	
○ 제성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77
□ 법 률 안	99
○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	101
○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149
※ 좌석 배치표	213

공 청 회 계 요

1. 목 차
공청회 개최 목적
공청회 개최 일시
공청회 개최 장소
공청회 개최 대상
공청회 개최 방법

2. 의 의
공청회 개최 목적
공청회 개최 일시
공청회 개최 장소
공청회 개최 대상
공청회 개최 방법

3. 일 정
2024. 11. 11(수) 13:30

4. 장 소
충청남도청(충청 143호)

5. 참 석 자

순서	성명	직책	비고
1	김영희	충청남도청장	주최
2	김영희	충청남도청장	주최
3	김영희	충청남도청장	주최
4	김영희	충청남도청장	주최
5	김영희	충청남도청장	주최
6	김영희	충청남도청장	주최
7	김영희	충청남도청장	주최
8	김영희	충청남도청장	주최
9	김영희	충청남도청장	주최
10	김영희	충청남도청장	주최

요 약 총 동

1. 목 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꾀하고자 함.

2. 안 전

-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중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문제

3. 일 시

- 2005. 3. 17(목) 13:30

4. 장 소

- 국회 제3회의장(본관 145호실)

5. 진술인 명단(6인)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한 홍 구	○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김 병 렬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홍 영 일	○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병역거부로 2년 복역	
정 창 인	○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오 태 양	○ 현재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 수감 중 ※(사)좋은벗들 상임간사	
제 성 호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6.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3:30	개 회
13:30~14:00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14:00~15:30	진술인 발표(1인당 15분)
15:30~16:00	정 회
16:00~18:00	질의 및 답변
18:00	산 회

7. 진행방식

가. 원칙적으로 위원회 의사진행의 예에 따름

나. 진술인 발표

- 1인당 15분의 시간 이내에서 발표.
- 진술인 발표 중 질의·답변이나 진술인 상호간 토론은 지양함.
※ 단 방청인의 서면질의를 허용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은 질의 및 답변시간에 하도록 함.
-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다. 질의 및 답변

- 정해진 질의의원 순서에 따라 1문 1답 순으로 진행.
- 필요한 경우 시간 제한.
- 방청인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되 서면질의가 허용될 수 있음.

진 술 요 지

그들을 꼭 감옥에 보내야 하는가?

한홍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성공회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그동안 기본권의 차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04년 7월 15일 대법원 판결과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감스럽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그런데 전체 대법관 12명 중 절반인 6명은 “이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용”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정당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다수의 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가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입법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뇌와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나름대로 국가적 해결책을 모색, 입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포함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지지한 것이다.

- 요컨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현재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 위헌은 아닐지라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 문제를 입법정책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병역법의 개정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체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가고 있다. 지난 여름 400명대로 내려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의 숫자는 다시 1천명에 육박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 우리 연대회의는 그 동안 주로 인권의 관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서는 안된다고 촉구해 왔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만 사람들처럼 인

권의 관점이 아니라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 볼 것을 권유한다. 한국 전쟁 때도 인해전술을 쓰는 중국군을 상대로 20만 조금 넘는 군대를 운용한 한국 땅에서, 경제력에서 우리의 1/30, 인구에서 우리의 1/2에 불과한 이복을 상대로 과연 69만 대군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미 30년 간 많게는 20만이 넘는 대체복무인원을 유지해 온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사회봉사를 시키는 것이 어느 편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국방의 의무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체복무제를 통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만은 실용주의적 개혁을 통해 인권문제도 해결한 좋은 사례이다.

-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이유로 처벌을 받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도 해결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인권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면, 대만의 경우는 군 개혁이라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검토되면서, 실용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권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우리 정부나 보수 세력이 배워야 할 점이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에서 시기상조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의 정황 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50여년간 진행된 재판에서도 번번이 이런 정황 논리로 헌법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가 무시돼왔다. 과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일까? 대한민국은 이미 50년에 걸쳐서 1만명을 감옥에 보내왔다. 이미 남북간의 국력과 군사력 격차는 벌어질 대로 벌어진 지 오래이다. 3대에 걸쳐 감옥에 가야 했던 50년이 시기상조라면 얼마나 더 긴 세월이 흘러 저들의 증손자, 고손자까지 감옥에 보내야 대체복무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이나 유럽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논의는 적과의 대치 정도가 아니라 2차대전과 같은 실제 전쟁 기간 중에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아직 30여 나라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만큼 많은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도 실제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6개국에 불과하고, 수감자 수도 다 합쳐야 300여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처음 문제제기될 때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를 합친 것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을 가둬두고 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남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거부하는 행위가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만일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단가,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면 지난 30여 년 간 방위병 제도 등 수 만 명씩 대체복무를 시켜온 병역제도는 어떻게 운영해왔단 말인가?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역을 대체할 수 있는 복무란 있을 수 없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특혜일 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가?

한국은 대만보다 훨씬 폭넓은 대체복무제도를 이미 30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 연대회의의 명칭도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가 아니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인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1969년 방위병 제도 도입, 1970년 전투경찰대설치법, 1973년 특례보충역 제도 도입 등을 통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역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다. 대만이 국위선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랑하는 외교역과 유사한 제도도 한국은 대만보다 앞서 운용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공익근무요원 55,000 명, 산업기능요원 55,000 명, 전문연구요원 15,000 명, 공중보건의 4,000 명, 상근예비역 36,000 명, 전·의경 50,000 명 등 2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현역이 아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 왔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일부에서는 현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란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현역들이 저야 하는 복무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온 얘기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은 적정 병력 규모를 산출하고- 아마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여도 될 것이다- 이를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제외한 면제자와 꼭 필요한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 전체 인구가 공정하게 부담해 개인이 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엄격히 처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형평성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병역의 형평성이 파괴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문제에 있지 않다. 입영대상 연령기의 청년 중 1990년 전후한 시기에 많게는 45퍼센트까지 현역 이외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게 만든 한국의 징병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현역으로 복무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 문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일부 예비역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할 만한 대체복무로 “한반도에 있는 지뢰 제거 작업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지뢰야말로 전쟁과 폭력의 상징이므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달아서 말이다. 어떤 예비역들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록도에서 한센씨병 환자들 수발 및 봉사나 무의탁·무연고자들이 모여 있는 각 지방 정신병동에서의 봉사, 또는 시한부 생명을 사는 에이즈 환자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은 되어야 대체복무를 받아들 수 있다고 말한다.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평화주의적 신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은 이라크의 전장에 가서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총을 들고 가서 평화와 재건을 위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평화의 벼으로써 진정 피해자들과 고통을 나누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출국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라크에 갈 수 없다면 그들은 지뢰 제거라도 좋다고 말한다. 총을 들지 않는 일은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이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실시되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을 것인가?

우리 연대회의는 2001년 7월과 200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만을 방문하여 대체복무제도의 실시 현황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만난 대만의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제도 도입 당시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우려와는 달리 대체복무 자체가 만만치 않게 힘들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

하지 않았다. 또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보면 과거 방위제도일 때는 현역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관계로 왕왕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곤 했으나, 복무기간이 현역보다 길어진 이후에는 병역기피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병무청에서는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또 일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급격히 늘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복무 판정 절차를 잘 세우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길은 얼마든지 있다.

1. 대만은 병역자원이 남아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반면, 한국은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대체복무제도 도입 후 지원자가 급증하여 현역병 수급에 차질을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만 당국자들은 지난 4년 간의 경험을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만은 대체복무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병력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로 한정하고, 우선 현역병 소유를 채운 후에 대체복무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원자가 대체복무 예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발하고 남은 인원은 현역으로 입대시키기 때문에 현역병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2000년 5월에서 2003년 5월까지 3년간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44,897명으로 이 중 실제 대체복무를 한 사람은 19,870명이었다.

대만이 1990년대 후반 이래의 감군으로 병역자원에 여유가 생겨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군이 처음 60만으로 팽창한 1954년 당시 한국 인구는 2천만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인구 규모는 2.4배 증가한 4800만인 반면, 병력 수는 1할 조금 넘게 증가한 69만이다. 반면 복무기간은 당시 3년에서 2년으로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때문에 한국군은 1954년 당시에 비해 상당히 병역자원이 넘쳐나게 되었고, 따라서 197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방위병 제도를 비롯한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온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나 종교신자들의 요구에 대해 국방부, 병무청 등은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병무당국은 한국의 입대 대상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다. 출산 기피로 해당 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감소 추세가 바닥을 치는 2006~2008년에도 연도별 19살 남자의 수는 32만 명을 넘는다. 2년의 복무기간을 가진 55만 명의 사병 집단을 유지하려면 매년 27만5천명이 입대해야 한다. (최근 군 당국은 의무복무 병을 4만 명 줄이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19살 남자인구가 2006년에 32만 명이 된다는 것은 1995년 이후 해당 연령 남성 인구가 최고에 달한 2000년의 42만 명에 비하면 10만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32만 명이란 수는 여전히 매년 한국군이 요구하는 사병 수요를 다 채우고도 4만~5만 명이 남는 수이다. 과거 군이 필요로 하는 수요 인원을 다 채우고 남은 20여만의 잉여 인력을 각종 병역특례로 인심 쓰듯 떼어주던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결코 현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지난 30여년 간 많게는 20만명이 넘는 대체복무인원을 운용해 온 한국이 갑자기 병역자원의 부족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병무청이나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1. 만약 대체복무제도가 실시된다면, 입영대상 젊은이들이 현역입영을 기피하고 대체복무제도를 선호하지 않을 것인가?

대만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인식이 젊은 층에 퍼지면서, 현역의 수급은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또 일반 젊은이들 사이에는 대체복무보다 현역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이는 “꼭 가고 싶습니다” 식의 박카스형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역에 비해 차별받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전도사 역할을 한 쟁타이리 역정서 부서장의 아들도 대체복무를 마다하고 현역으로 입대하였다고 한다. 한국 병무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자기 비용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재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재신검 신청 제도가 생겨난 99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105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자들이 한국의 공익근무요원이나 과거의 방위병과는 달리 내무생활을 하고, 기간도 길며, 일도 현역에 비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대체복무와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교적 요인에 의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이들의 복무기간이 처음 현역의 1.5배에서 지금은 1.1배로 줄어들었다.

이미 수십 년 간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한다고 해서 현역병 수급에 차질이 오리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특권층의 병역기피는 주로 신체검사 비리를 통한 병역면제 쪽이나 연구직 또는 특정기업체를 통한 병역특례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 현역병만큼 긴 기간 동안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서 감내하기 결코 쉽지 않은 노인환자 간병 등을 해야 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에서 그 인원수를 매년 1천명 이내로 제한하고, 4주간의 군사훈련을 면제하는 대신 복무기간을 4-6개월 정도 길게 한다면, 병역자원 수급에서나, 병역기피 관련으로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은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우리 사회의 기독교신자들 중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이 자칫 특정종교 - 그것도 이단 - 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정종교 신도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신자,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특정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박해와 차별을 중지하자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일제강점기나 대한민국정부 수립 뒤나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한 행동은 독립운동으로 찬양받고, 군사독재 시절에 한 행동은 반국가사범으로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나치는 여호와의 증인들 수천명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국법을 준수하고 손에 무기를 들고 조국을 방어”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서명 강요라는 형식은 없었다 뿐이지 군사독재정권도, 문민의 정부도, 국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똑같은 논리를 강요하며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할아버지는 일제의 감옥에 갔고, 아버지는 군사독재의 감옥에 갔

고, 그리고 민주화가 되었다는 마당에 아들은 '민주화된' 감옥에 여전히 간다. 남부지법의 판결이 있던 2004년 5월21일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여전히 일제강점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서구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실현되어 온 역사는 기독교평화주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2001년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국방부보다도 더 열심히 대하고 나선 것은 이 땅의 주류 기독교였다. 한국전쟁이 한국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계기가 되었던 탓일까? 우리의 기독교인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무기를 들 수 없다고 죽음을 택한 막시밀리아누스 등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의 후예라기보다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베투려 칼을 만드는 십자군의 후예들이다.

감리교신학대학장을 오래 지낸 고 흥현설 목사는 일찍이 1959년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 때문에 징집거부를 한 것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양심적 비전론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아직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전체 국민의 1/4이 기독교인이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대형교회가 즐비한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부족한 것일까? 기독교 평화주의의 핵심적인 실천과제인 양심적 병역거부는 언제까지 기독교인들에 의해 이단들의 짓거리로 교살되어야 하는가?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 아닌가?

여호와의 증인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은 정말 기우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2001년 12월 이래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 씨에서부터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던 사람이 총을 들 수는 없다고 선언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진 씨에 이르기까지 모두 14명의 병역거부자가 나오게 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청년이었다. 그에게 왜 여호와의 증인을 포기하였으며, 그런데도 감옥에 가야하는 병역거부는 하려고 하는가를 물었다. 그는 수줍어하면서, 20대 청년으로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자니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평화 신념만은 지키고 살아야 하겠기에 감옥을 가

더라도 병역거부는 해야겠다는 것이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답답할 정도로 규율이 엄격한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또한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는 근대국가에서 이단 문제는 종교 내부에서 풀어야 할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 특히 공익근무요원 인원 내에서 1천 명 이내(매년 7-800명 정도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오고 있다)의 인원에 대해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면제하는 대신 복무기간을 4-6개월 정도 연장하면 된다.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병역특례로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대신 4-6개월 정도 더 복무해야 한다면 이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만에서 대체복무자를 위한 훈련에는 제도 도입당시에는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들은 이 4주 간의 훈련을 면제받는 대신 4 - 11 개월 더 복무를 한다. 한국에서도 병역특례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도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받으면 징집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대만은 최근 대체복무자들의 훈련과정에서 군사·사격훈련을 삭제했다. 대체복무자들의 교육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을 위한 훈련에서 군사·사격훈련을 삭제하는 작업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이루어졌다. 대체복무요원들이 실제로 총을 들고 싸워야 할 일은 없고, 유사시에도 현역과 예비역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국방부나 역정서 모두가 판단했다. 대신 대체복무자들에게 긴급구조과정, 체력훈련, 전문과정, 예절교육 등을 강화하여 실용적이고 생동감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은 대체복무자들에게 불필요한 군사훈련을 강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비종교인으로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전문자격을 갖추거나 자원봉사를 많이 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체복무에 지원하면 된다. 이들은 징집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병역특례의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4주 간의 군사훈련 때문에 3년 여를 감옥에서 보내고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 일이 많았

다. 대체복무자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훈련을 없앴으로써 대만은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한국전쟁 때도 20여만의 병력으로 전쟁의 대부분의 기간을 치렀고, 현재 70만의 대군에 300만의 예비군을 보유한 나라에서 대체복무자들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연이 과연 있는가?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이 문제를 방치해 둘 경우 한국의 국제적 위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방법은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보았지만, 반대편 토론자들도 대부분 토론회의 뒷자리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데에는 반대하지만, 이들을 계속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의 해결을 입법부에 요구했다.

시급히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감자의 수는 곧 1천 명을 넘어설 것이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수감된 사람의 수는 3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300여 명의 사람들 중 250여 명이 국민소득 200\$가 안되는 르완다 사람들이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위신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첨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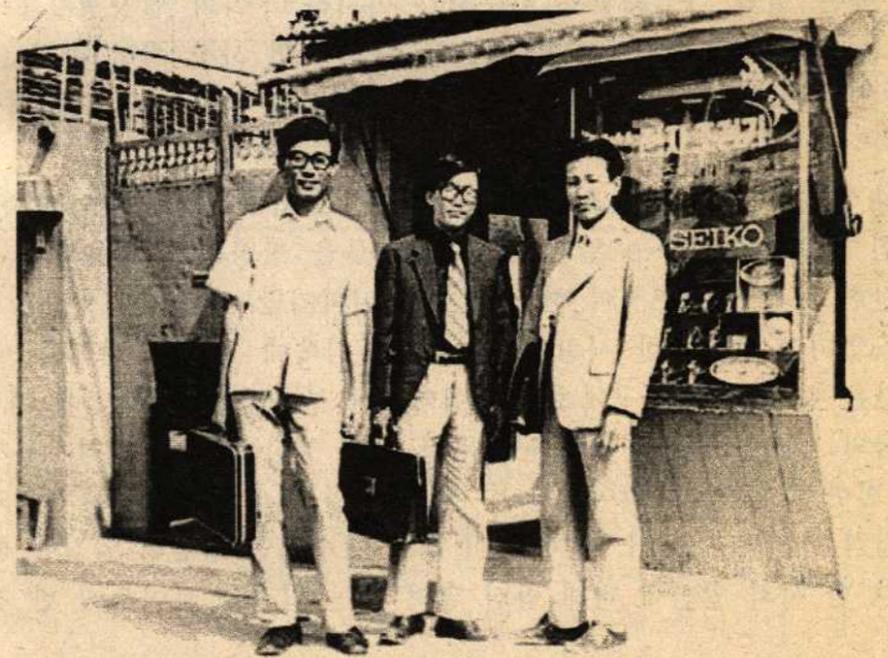
<한겨레21> 511호, 2004년 5월 27일자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여호와의 증인’ 앞에서 부끄럽다

-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혁명가들보다 더 비타협적으로 군대를 거부했던 그들의 정신 덕분에 결국...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004년 5월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4명 중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 수립 이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만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낸 끝에 나온 새로운 판결이다. 획기적인 판결이란 바로 이런 때 쓰는 말인가 보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아직도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야 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해결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1976년 3월19일 39사단 헌병대 입창 중 구타로 인한 비장파열로 사망한 이춘길(위 가운데). 군 당국의 조치는 그의 장례에 부대장 명의 부의로 1만원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지 않았다.

1990년대의 인권운동에서 가장 상징적인 해결과제는 비전향 장기수였다. 비전향 장기수가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배척받는 '빨갱이'가 아니었던가?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한국의 인권운동에서 당면 핵심과제로 떠오른 것은 '빨갱이'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자각이 뒤늦게나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적용돼간 과정을 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징역을 살아야 했던 여호와의 증인들은 '빨갱이'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으로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다음에야 여호와의 증인을 중심으로 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인권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주의·군사주의·권위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왕따'를 당해왔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내면의 명령에 따라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집총을 거부해왔다. 친일파들이 경영자로 등장한 대한민국에서 사상이나 양심이나 하는 것은 차라리 경멸의 대상이거나 위험물이었다. 비단 친일파들만이 아니었다. 양심과는 거리가 먼 비도덕적인 자들과의 싸움에 익숙해져 있는 탓인지,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너무 일찍 '전술'에 눈을 뜨며 약아져갔다. 그 시절 사람들은 경찰에 잡혀가면 대부분 별다른 양심의 가책 없이 반성문이나 각서 쓰고 '훈방'되는 데 익숙했다. 그런 우리에게 전향서라는 '그까짓 종이 한장' 쓰지 않고 수십년 감옥에 앉아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이나, 눈 딱 감고 4주 군사훈련 받으면 병역특례로 빠지는 길이 널려 있는 한국에서 3년의 징역을 택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존재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여호와의 증인, 1930년대부터 시련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1930년대부터 여호와의 증인들은 탄압받기 시작했다. 1939년 1월 일본에서 두명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투옥됐다.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적인 평화론자'로 몰아붙였다. 1939년 6월 일제는 일본, 대만에 이어 조선에서도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를 단행했다. 조선에서 체포된 여호와의 증인은 38명이었는데, 당시 교세가 미약했던 여호와의 증인 거의 전원이 체포됐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중 5명은 옥사했고, 해방이 되어서야 옥문을

나선 사람은 33명이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많은 민족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일제의 탄압 아래 무릎을 꿇었고, 또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 좋은 목사님들도 믿음에 상처를 입었다. 해방 당시 전국의 교도소에서 비전향을 견지하고 있다가 옥문을 나선 사회주의 혁명가는 20여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33명이 비전향으로 옥문을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평신도들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하지 않고 총을 들기를 거부하여 옥고를 치른 것이 이른바 등대사(燈臺社) 사건이다. 이 일을 두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믿음을 지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 말하지만, 정부가 편찬한 독립운동사 서적에는 등대사 사건이 항일운동의 하나로 기록돼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의 별집은 일제강점기에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의 신상기록카드를 모아놓았는데, 여기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투옥된 여호와의 증인들의 사진이 첨부된 신상기록카드가 여러 장 수록됐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일제강점기나 대한민국정부 수립 뒤나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한 행동은 독립운동으로 찬양받고, 군사독재 시절에 한 행동은 반국가사범으로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나치는 여호와의 증인들 수천명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국법을 준수하고 손에 무기를 들고 조국을 방어"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서명 강요라는 형식은 없었다 뿐이지 박정희도, 전두환도, 김영삼도, 김대중도 그리고 노무현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똑같은 논리를 강요하며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할아버지는 일제의 감옥에 갔고, 아버지는 군사독재의 감옥에 갔고, 그리고 민주화가 되었다는 마당에 아들은 '민주화된' 감옥에 여전히 간다. 남부지법의 판결이 있던 2004년 5월21일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여전히 일제강점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헌병대 입창중 맞아죽은 청년

일본의 극우파들이 '대일본제국의 마지막 군인'이라 찬양한 박정희가 다스리는 병영국가에서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철저한 탄압의 대상이 되

었다. 병역기피율 0% 프로젝트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최고의 걸림돌이었다. 1975년 2월18일 병무청장은 대통령 박정희에게 “종교적인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계몽 선도하기 위하여 그들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대표들이 “일부 신도의 병역기피 행위는 그릇된 소행”임을 인정했고, “병역기피 방조 등을 하지 않고 병역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한마디로 이 보고는 허위였다. 2001년까지 아무런 소리소문 없이 매년 수백명씩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견지해온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가 “그릇된 소행”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허위보고를 올린 병무청이나 군당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병역기피율 0%를 달성하기 위해 징역을 살고 나오는 사람들- 1970년대에는 지금과는 달리 징역을 살고 나와도 영장이 계속 발부됐다- 이 채 교도소 문을 나서기 전에 병무청 직원들은 이들을 입영통지서도 없이 다시 잡아 총을 주고 다시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하는 악랄한 방식을 사용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을 교도소 문 앞에서 가족이 기다리는데 손 한번 잡아볼 시간도 주지 않고 다시 잡아가야 할 절박한 사연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분위기에서 맞아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남 거제 출신의 이춘길이라는 청년은 1976년 3월19일 39사단 헌병대에 입창 중에 구타로 인한 비장파열로 사망했다. 군 당국이 취한 조치는 그의 장례에 부대장 명의로 부조금 1만 원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살벌했던 유신시대에 생때같은 아들을 잃은 홀어머니는 진상조사나 배상청구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김종식이라는 청년도 집총을 거부하다가 논산훈련소에서 맞아 죽었다. 군복무만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 병역거부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일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병무청에서는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또 일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급격히 늘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복무판정 절차를 잘 세운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길은 얼마든지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은 정말 기우이다.

병역기피 악용, 걱정 안해도 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2001년 12월 이래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에서부터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던 사람이 총을 들 수는 없다고 선언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진씨에 이르기까지 모두 14명의 병역거부자가 나오게 되었다. 그들 중 한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청년이다. 그에게 왜 여호와의 증인을 포기했으며, 그런데도 감옥에 가야 하는 병역거부는 하려고 하는가를 물었다. 그는 수줍어하면서, 20대 청년으로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자니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은 어릴 때부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평화 신념만은 지키고 살아야 하겠기에 감옥을 가더라도 병역거부는 해야겠다는 것이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답답할 정도로 규율이 엄격한 여호와의 증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과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일까? 대한민국은 이미 50년에 걸쳐서 1만명을 감옥에 보내왔다. 이미 남북간의 국력과 군사력 격차는 벌어질 대로 벌어진 지 오래이다. 3대에 걸쳐 감옥에 가야 했던 50년이 시기상조라면 얼마나 더 긴 세월이 흘러 저들의 증손자, 고손자까지 감옥에 보내야 대체복무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단 말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꺼리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30년간 많게는 15만명, 적게는 7만여명을 방위,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체 특례요원 등 각종 명목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해왔다. 내가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조금 긴 이름을 가진 단체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대신 ‘개선’이란 단어를 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만일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고,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면 지난 30여년간 수만명씩 대체복무제도는 어떻게 운영해왔단 말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실시- 기존의 대체복무제도와는 4주간의 군사훈련 대신 4~6개월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 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하

는 한국이, 이북의 국가예산보다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는 한국이 돈이 없어서 육군사병들에게 똑같은 전투복 팔 접어 입다가 펴서 입게 하면서 사계절을 보내게 하였겠는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입영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군 당국은 우수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태까지의 말도 안 되는 복무 여건을 신속히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문제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의 신앙의 자유 차원이 아니라, 평화주의자들까지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로 토론회에 여러 번 나가봤지만, “그럼 저 사람들을 계속 감옥에 보내자는 말이나”고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는 토론자들도 없었다. 이제 많이 처벌했으니 “봐줄 때도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기분에 따라 봐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낮은 권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한 가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은 지금부터 100여년 전만 해도 다 금지된 것들이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어디 감히 대궐보다 높이 집 지을 궁리를 할 수 있던 말인가? 낮은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숨쉬는 것만 빼고는 모두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100년전엔 ‘아파트’도 금기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아직 30여 나라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만큼 많은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도 실제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5개국에 불과하고, 수감자 수도 다 합쳐야 70여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처음 문제제기될 때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를 합친 것의 7배가 넘는 사람들을 가

둬두고 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남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거부하는 행위가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허용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김병렬(국방대학교장, 임직부장)

1. 서론의 소개

김 병 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2. 종교적 신념에 대한 입장

최근의 국제적인 이혼 추세와는 다른 국가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의 병역 또는 입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법제도를 제정하여, 입헌국에 대한 종교적 자유와 "일체의 입법은 조약보다도 선의 중에 행하여져야 함"이란 헌법 조항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적용되는 한, "종교"라는 개념에 대한 "종교"의 범위를, 국가의 입법권 내에서 어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종교"의 범위를 위한 영향을 받았던 발기 입법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본래 "양심"과 "양심"이라는 개념 "양심"으로 번역되고 있는 "Conscience", "Gewissen"이라는 것이 현대종교의 "양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면, 법적 관점에서 양자가 1948년에 제정된 미국의 "일반군사훈련및병역예만훈련법(The Selective Military Training and Service Act)" 제6조 1항이 "종교적 교리와 신념"을 가진 병역의 전방에 참가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전부"로 되어 있다. 여기서 종교적 교리와 신념이란 종교적 관습, 즉 집단 전체의 신념을 가리키는 것이지, 본질을 철학적이거나 사회학적·철학적인 것만 혹은 집단 전체가 아니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된 것을 보면, 더욱 병역 거부권에서 관용적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는 가장정당한 소년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허용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김병렬(국방대학교수, 법학박사)

I. 진술의 요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방부 측의 입장은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지만 남북관계가 평화정착체제로 갈 시기에 대비해서 장기과제로 제도 연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발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외국의 사례나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등에 대한 국방부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II. 외국의 사례에 대한 입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지 않은 국가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화하기 시작했으며, 1963년에 교황 요한 23세가 “일체의 전쟁은 不正義이고 신의 뜻에 반한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강제에는 누구도 복종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회칙을 발표하게 되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교황의 회칙에 의한 영향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종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양심”으로 번역되고 있는 “Conscience”, “Gewissen”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신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¹⁾는 사실을 보면 명확해진다. 나아가 1948년에 제정된 미국의 ‘일반군사훈련및병역에관한법률(The Universal Military Training and Service Act)’ 제6조 j항이 “종교적 교리와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전투로부터 면제된다. 여기서 종교적 교리와 신념이란 초월적 존재...에 관한 개개인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질상 정치적이거나 사회학적·철학적인 견해 혹은 단순한 개인의 윤리관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는 가상적국인 소련의

1) 구병삭, 헌법학 1(박영사, 1983), 492면.

붕괴로 이를 허용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보다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80여개국 가운데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덴마크, 대만 등 30여개국이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0여개국이다.²⁾ 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태리가 2005년 1월부터 전면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이 2006년부터 완전 지원병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안보위협의 소멸로 인하여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중간단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의 규정도 독일, 네델란드, 스위스 등 9개국은 이를 헌법조항에 반영하고 있으며,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 등 10여개국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등 나라별로 처한 환경에 따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모병제나 징병제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대체복무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또 이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많은 국가들이 위헌시비를 막기 위해 아예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II. 유엔 인권위의 결의에 대한 입장

유엔헌장 제51조는 타국의 침략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침략을 위한 무력행사는 금지하고 있지만 自衛를 위한 무력행사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장을 바탕으로 1978년 총회결의 33/165에 의해 유엔은 “인종차별을 감행하는데 이용되는 군복무나 경찰복무를 거부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침략이나 인종차별을 위한 군복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1984년에 경제사회이사회가 병역거부권문제를 인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위임하게 되었는데 이 위임을 받은 인권위원회가 1987년에 결의 제46호로써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최초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르게 변질되었던 것이다. 이후 1989년부터 2-3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유사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걸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와 관련된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기구는 日帝에 의한 정신대 강제동원 등

2) UN ESC, ECN.4/1997/99(1997.1.16), Annex II.

과거와 현재의 인권침해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조직적 강간이나 성노예에 관한 결의’를 채택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외면을 하는 등³⁾ 정치성이 매우 강한 기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여전히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對人地雷禁止協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보다 훨씬 더 규범력이 강한 국제조약조차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IV. 학설 및 판례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고 양심실현의 자유 중 일부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양심실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허용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絶對的 無制約說을 부인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다른 교수들과는 달리 권영성교수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데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자연권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에 따른다면, 헌법상 명문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는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연권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저항권 내지 시민불복종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한다.....입법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解釋論’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이나 독일연방헌법법원의 판례들도 관련된 헌법과 법률조항의 문언해석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설문의 경우 甲은 그 종교적·양심적 신조를 이유로 군복무나 집총훈련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⁴⁾라고 하면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해왔으며,⁵⁾ 현재의 경우에도 2004.8.26 “남북한간 평화공존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병역기피요인도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일괄 병역의무를

3) 동아일보, 2001.8.15.

4) 권영성·신우철, 신고 헌법학 연습(법문사, 1999), 199면.

5) 대판 1976.4.27, 75누249; 대판 1985.7.23, 85도1094; 대판 2004.7.15, 04도2965.

부과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⁶⁾고 결정함으로써 남북이 대치하는 현재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앞선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V. 대체복무제의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2004.8.26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거부자의 병역법 위헌제청사건에서 7:2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5명의 재판관이 “이제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배려로 갈등완화와 대체복무인정 등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며, 양심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러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개선되었는지, 국민적인 정서가 변화되었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상 불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를 따라하거나 국제기구의 결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만도 허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라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대만은 지역적 특성(섬나라) 때문에 육군보다는 해·공군 위주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병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의 280만 병력에 대해 불과 60만의 병력으로는 효과적인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군사적인 방어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방어가 더 효과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7년에 정실안(精實案)이라는 병력감축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징집가용자원이 초과되어 2000년 초 대체복무실시조례를 통과시킨 뒤 잉여 자원을 대체복무토록 하면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즉 대만의 대체복무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고 국민적 공감하에서 잉여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원병제를 점차 확대 현재는 5:5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아 대만 역시 지원병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보여진다. 혹자는 대만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종교적 신념을 빙자한 병역거부자가 급증할 우려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만의 경우 일반 대체복무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함께 운용하고 있는데 일반 대체복무의 경우 2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의 경우 2년 2개월간 복무토록

6) 2002헌가1.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대체복무 희망자가 급증하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희망자도 첫째 13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매년 50명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이 급증하는 사례는 독일의 경우 불과 20년 사이에 28배가 증가, 징집가용자원의 40%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둘째, 징병제도의 기본틀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연간 600명 정도의 극소수에게 인정해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역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며 제7일 안식교는 물론 심지어 불교도까지 상당수가 동일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셋째, 병역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복무 대신에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를 한 후 8년간 예비군훈련을 받고 유사시 국가의 소집동원령에 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제도는 일정기간 사회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현역복무는 물론 예비군훈련이나 국가유사시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까지를 완전히 면제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즉 봉사활동을 하는 대신에 병역의 의무를 면제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수입 가운데 적절한 비율만큼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각종 사회시설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아름다운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의무를 면제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요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요구를 인정해준다면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봉사활동을 한 시간만큼 군복무를 감해주는 조치를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하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법에 대한 선택적인 불복종을 허용해주는 것이 되어 객관적 절차와 과정에 의한 범규범의 기속력을 손상시키게 되는 위험이 있다.

넷째, 징병가용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지난 '80-'90년대 1자녀 갖기 운동 및 결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징병가용자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소요대비 가용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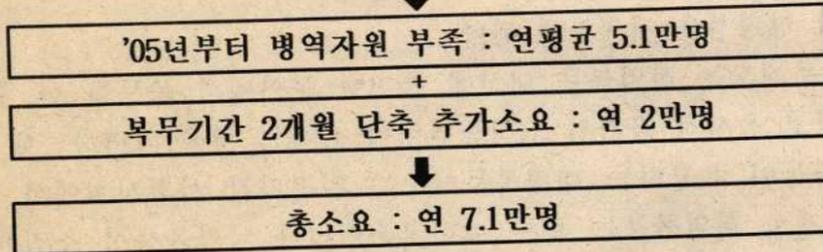
○ 병역자원 수급전망

(단위:천명)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20세 남자	375	345	329	321	320	325	335	353	367	375
현역가용자원	307	287	270	263	259	263	270	282	292	299
현역소요	263	262	262	263	263	263	263	263	263	263
과부족	+44	+25	+8	0	-4	0	+7	+19	+29	+36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대체소요	67	66	66	66	66	66	66	66	66	66
과부족	-23	-41	-58	-66	-70	-66	-59	-47	-37	-30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이월자원('03년:46)	+23	-18								



따라서 국방부는 현 대체복무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최종적으로는 완전폐지하면서 종전의 보충역자원을 현역으로 전환시키고 병으로 충당하던 직위를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등 철치부심하고 있다.

○ 부족자원 충당계획

계	대체복무 감축·폐지	보충역 현역전환	병 부사관대체
71,000명	37,000명	29,000명 - 1~3급 고퇴·중졸자:18,000 - 대학4급자상근역활용:11,000	5,000명 -'04~'07년간 5,000명씩 20,000명 대체

(단위 : 명)

구분	계	상근예비역	전투경찰			경비교도	산업기능	전문연구	공보의등
			작전전경	의무전경	해양전경				
'02 지원	66,300	16,900	8,500	15,000	1,700	2,200	17,000	3,000	2,000
'06 계획	29,200	14,500	8,500	0	1,200	0	0	3,000	2,000
감축계	-37,100	-2,400	-	-15,000	-500	-2,200	-17,000	-	-

* 감축폐지 우선순위 : 비전투분야인 산업기능요원, 경비교도, 의무전경 등.

이러한 가운데 소위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가용자원의 문제와 더불어 기존의 특정 종교단체 이외에 불살생의 계를 가지고 있는 불교신자들이나 반전평화 등을 내세우는 후발종교단체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속출하게 됨으로써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는 부득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여성의 징집을 검토하여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징병제도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섯째, 대체복무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대체복무는 근본적으로 잉여자원에 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시킨 후 지정된 직역에서 근무하다가 국가 유사시 동원되어 국가가 부여하는 군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후에도 일정한 예비군 훈련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입영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도 국방의 임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즉 사회봉사를 통한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대체복무제도와 근본적으로 상치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여타 대체복무제도 신설 및 확대요구가 우려된다.

위와 같이 가용자원의 부족으로 현행 대체복무제도마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야 함에도 현재 각 부처의 필요에 의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총16개 분야에 25,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이를 수용할 경우 전분야에 걸쳐 도미노현상으로 파급되어 국방의 의무 이행여부 자체가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될 것이 우려된다.

일곱째,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종교적·철학적인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진실성인데, 인간의 내심에 있는 신념을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개념에 다양한 신념이 포함되어버림으로써⁷⁾ 그 판단기준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판단기준이 모호할 경우 자신의 신념을 보다 명료하고 유리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조언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유리하게 될 위험이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의 판단이 위와 같은 이유로 어렵게 되자 1977년에 신병역법을 제정하면서 심사할 필요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선언만 하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징집가용자원의 90%가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구하게 되어 위 병역법을 부랴부랴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여덟째, 종교간 종파간 새로운 갈등이 우려된다.

현재 특정 종교인이 전체 병역거부자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대체복무 허용 움직임에 대하여 전통교단에서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만약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신앙전도가 예상되는 바 종교종파간 갈등이 더욱 극렬해질 우려가 있고, 나아가 다른 종교에서도 교리를 내세워 병역거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아홉째,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이다.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야후의 경우 8,547명중 91%인 7,778명이 유죄판결에 찬성했고 반대는 8%(705명)에 불과했으며 네이버의 경우 32,568명중 83.02%인 27,038명이 찬성 했으며 반대는 15.3%인 4,982명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서구국가들의 경우 가족이나 동네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군에 입대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X-ray사진을 조작하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는가 하면 원천적으로 군입대를 면제받기 위한 원정출산이 유행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정서하에서 선불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참담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의 기간과 대역직무를 힘들게 하여 사이비 신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복무기간보다 현저히 늘리거나 위험성이 따르는 임무(예컨대 지뢰제거, 폭발물 취급 등)에 종사하도록 할 경우 징벌적 효과에 의해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비난이 따르게 되므로, 대체복무기간을 충분히 길게 하거나 위험하거나 힘든 직역에서 복

7) 여호와의 증인 교리, 불교의 불살생 계율, 미신에 의한 믿음, 무종교자의 반전평화주의 신념 등.

무를 시킨다는 것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열번째, 국가에서 부여하는 다른 의무에 대한 거부 명분 제공

양심의 실현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해 줄 경우 또다른 의무 거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느님의 백성이므로 하느님에게 내는 조세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이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도 현역병들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많이 있는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이들의 반발 및 사기저하가 불을 보듯 명백하다.

VI. 결 론

현재도 많은 인원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기껏해야 연간 1,000명도 안되는 특정 종교 신자들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해 주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병역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1,000명이 아니라 100명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대체복무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이들이 집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조국이 침략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온 국민이 전력을 쏟고 있는데, 자신의 “양심” 운운해가면서 “나만은 제외시켜달라”고 한다든지, 나아가 “나는 있어봐야 아무런 도움도 안된다”고 하면서 해외로 도피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文을 숭상하고 武를 천시하는 그릇된 사상이 뿌리깊이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입대를 기피하려고 하는 풍조가 있다. 이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군입대를 기피하기 위해 뇌물을 준다든가 손가락이나 무릎관절을 절단하는 등 신체를 훼손하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입대전

8) 대만의 경우 신체를 훼손하는 사례가 극히 일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진 술 요 지 서

양심적 병역 거부 수행자 가족 모임 공동 대표 홍영일

저는 1990년 4월 23일 군사 훈련 거부를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당시 법정 최고형인 2년을 선고받고 1992년 5월 3일에 만기 출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뜻 깊은 공청회 자리에서 저와 같은 병역 거부자들의 입장과 겪은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 병역거부하는이유

저는 여호와와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세속적인 문제에 대한 엄정 중립을 고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병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점은 다른 대다수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태 5:44; 요한 18:36; 이사야 2:4) 온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때때로 언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해결을 폭력에 의존한다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와 같은 입장은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역 참여가 한 지역의 평화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면 병역 거부는 전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인간사의 현실이었기에 인류 대다수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무력 균형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만큼은 세속의 가치와는 달리 순수한 평화라는 인류의 이상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을 치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종교인들에게는 내세관이 있고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 병역거부의역사

역사적으로 볼 때 병역 거부는 주로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래 병역 거부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마태 26:52) 이 점에 대해 저명한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어떻게 기독교

교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평화적인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미 칼을 빼앗으신 이상 어떻게 기독교인이 칼 없이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¹⁾ 이러한 이유로 295년 병역을 거부했다가 로마 총독의 명에 따라 처형된 막시밀리아노는 병역 거부로 순교한 최초의 기독교인입니다. 또한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 심각한 박해를 하였는데, 이는 교인들이 황제예배를 거부하고, 병역 거부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²⁾ 이후로도 병역 거부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왔는데, 발도파, 제3차 프란체스코 수도회, 롤라드파, 카타르파, 후스파의 일부가 병역을 거부하였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미국에서 웨이커 교도와 메노나이트파를 시작으로 나사렛파, 재림파, 침례교도, 여호와의 증인 등이 병역을 거부하였습니다. 가톨릭도 사목헌장 79항에서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세계 230여 나라에서 현재 6,500,000여명(한국은 9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³⁾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전세계 주요 분쟁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역사학자 크리스틴 E. 킹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서 10,000여명이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그 중 2,500여명은 결코 풀려나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⁴⁾ 구 소련에서는 한 지역에서만 수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시베리아 유형을 포함해 수십 년 간의 형기를 복역하기도 하였습니다.⁵⁾ 중공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선교인이 한국전 참전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5년 간의 독방 수감 생활을 한 것이 국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⁶⁾ 이 자리에도 많은 전문가들께서 자리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국제 문서들에는 여러 나라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 거부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39년 33명의 남녀 증인들이 검거되어 신사 참배 거부와 치안유지법 위반⁷⁾으로 해방 때까지 옥고를 치른 이래 만 여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 거부로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⁸⁾ 특히 지난 1970년대

1) Jenny Teichman, *Pacifism and the Just War*, (Basil Blackwell, 1986), p.113

2) 서양사개론, 민석홍 저, 삼영사, 1999년 제2판, 139면 참조

3) http://www.watchtower.org/statistics/worldwide_report.htm

4) Christian E. King, *The Nazi State and the New Religions: Five Case Studies in Non-Conformity*

5) 부록 자료2 참고. 경향신문 해외화제 (83.3.14)

6) 부록 자료3 참고. 한국일보 지평선 (63.5.30)

7)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가 실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적용된 죄명이며, 이보다 앞서 일본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징총거부로 인한 항명죄로 수감되었으므로 본질은 병역 거부로 인한 탄압이라 할 수 있다

에 병역 거부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금산에 사는 한 분은 충남대 의대 1년을 마치고 1969년 병역법 위반으로 10개월의 형을 산 뒤, 1974년에 다시 징집되어 3년 형을 살았고, 출소하던 날 병무청 직원에 의해 다시 연행되었습니다. 이미 징집 연령이 지났음에도 의대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자료에 근거하여, 헌병대에 끌려가 징집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이번엔 4년 형을 선고받아 도합 7년 10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지금 이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한국의 병역 거부자들은 대만의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들이 겪는 일을 보면서 위안을 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국가로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제가 수감될 당시인 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만의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들은 감옥에서 평균 7년에서 12년, 많게는 15년까지 복역하기도 하였습니다.⁹⁾ '거대한 나라 중공(中共)과 대적하고 있기에 무척 엄한가보다'라고 여기면서, 대만처럼 열악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 사회가 병역 거부에 대한 대가로 징역을 요구한다면 이를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고 여겨왔고, 그러한 마음은 지금 이 순간 감옥으로 향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행히 이처럼 양심을 지키면서 그 처벌을 기꺼이 감수해 온 수 많은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 각계 각층의 뜻 있는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 처벌-인력활용의 측면

아시는 것처럼 한국 병역 제도에는 특별한 전공을 한 사람들에게 4주 간의 군사훈련 후에 일반적인 직장 생활과 동일한 환경과 급여를 누리면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마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모 대기업의 연구소에 입사하여 전문연구요원 생활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양심은 전문연구요원에게 부과되는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게 하였기에 결국 2년 간의 수형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도 3년 만에 KAIST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재원으로 곧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기초군사훈련에 소집되었고 이를 받을 수 없었기에 결국 KAIST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

8) 부록 자료1 참고. 사상회보 (1940.9)

9) 한겨레21 제351호 (2001.3.20)

로 기소된 후로는 판사의 배려로 약 4년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난 정기 국회 때 대체복무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다 결국 올해 초 수감되어 지금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는 만기 출소 후에 신원조회를 하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가 없어 몇 년 간 속셈학원과 방문 판매 회사를 전전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병역 거부자 한 분은 의사였으나 출소 후 면허가 취소되어 노상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 놓기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처벌-‘범죄’예방의 측면

정부는 이미 40여 년 전인 1961년에 행형법을 개정하여 ‘형무소’라는 명칭을 현재의 ‘교도소’로 개칭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용시설이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곳이 아니라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을 해치기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교정교화의 대상으로 삼아 교도소로 보내 전과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행형 이념에도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한국의 지난 십수 년 간의 병역 거부자 발생 숫자 추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은 결코 교정교화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구금과 처벌로는 어떤 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없음을 잘 보여 줍니다. 92년 220명에서 2001년 정점인 804명, 2002년 734명, 2003년 705명, 2004년 754명이 병역 거부를 하였습니다.¹⁰⁾ 94년에 법정 최고형이 2년에서 3년으로 증가하였지만 병역 거부 인원은 점진적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또한 위의 사례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사회의 얼마의 사람들은 비폭력적인 방식의 평화를 원하는 신념을 받아들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전 역시 학창 시절 한 여호와의 증인에게 "왜 당신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마태 5:44)는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지킬 뿐"이라는 간단한 답변을 듣고 무척 공감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이 맞아 죽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길을 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본질인 양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10) 부록 자료4 참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발생 추이

▪ 처벌-인권적 측면

197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겪은 고통도 다양하였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연행하여 다시 군 부대로 넘겨 영장도 없이 강제 입영을 하게한 일 이미 군사 훈련 거부로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에게 군 교도소 내에서 재차 군사 훈련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들에게 다시 실형을 추가로 선고한 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다시 병역을 거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복역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일 이미 집총을 거부한 자에게 다음 날 재차 집총을 명하고 이를 다시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에게는 경합범이라 하여 1.5배의 형량을 선고하는 일 그에 더해 구타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만성 환자가 되어 출소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와 심지어 사망하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던 1993년 당시 정기 국회는 군형법 제44조의 법정최고형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1994년 7월 재판부터는 최고형이 고스란히 선고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을 당시인 1990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여전히 단지 몇 분 만에 심리를 마치는 요식적인 재판을 통해 기계적인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으며, 교도소에서는 일체의 가석방이나 행형 성적에 따른 등급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최하위 등급자로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함께 수용된 일반 재소자들이 성추행을 하거나 정직성을 꺾으려고 시도하는 것에 저항해야 했던 기억들은 열악한 수감 생활과 더불어 20대 초반의 순수한 젊은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되었으며, 출소 후 공황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초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고 그 동안 묻혀져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사회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시행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강제 입영 조치로 인해 어느덧 관행화된, 강제 입영 후 군사 재판이라는 절차를 더 이상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간혹 병무청에서 대동하여 강제로 입영을 시키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인권 환경이 더 나은 민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군대 내 비무장 근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결벽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공산 국가에서는 수용소에서 우라늄을 캐라는 명령을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것이라 하여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들이 결국 한겨울에 물세례를 받고 동사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¹¹⁾

▪ 외국의 병역거부사례들

최근 다양한 동기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인권 관계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 병역 거부를 여호와의 증인의 전유물로 여겨온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합니다. 외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오히려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중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의 숫자는 대략 12,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여호와의 증인은 532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가톨릭 162명, 감리교 845명, 장로교 735명 등 소위 '주류' 기독교인의 병역 거부자가 2,187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¹²⁾ 물론 다양성이 곧 병역 거부자의 급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12,000명도 당시 3,000,000명이 넘는 징집 인원에 비하면 1%도 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2005년 2월 15일 현재 885명의 젊은이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수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들이 실제로 수감되어 있는 나라는 2004년 8월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9개국이며 전체 수감자의 70% 이상이 한국에 수감되어 있습니다.¹³⁾ OECD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대체복무 제도가 없이 남녀 모두를 징집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3번 입대 영장을 발부하고 매번 그들의 종교적 신분을 확인한 뒤 입대 명령을 보류하는 식으로 결국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Deferment system)

▪ 병역거부자들의 유용성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보조 인력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정직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교도관을 보조

11) 부록 자료5 참고. Milo Kominek, *Even underthe Sky There is Hell*. (NH, 1971), p.117.

12) 부록 자료6 참고.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종교적 배경.

13) 수감자 숫자: 한국 885명, 르완다297명, 싱가포르 20명, 앙골라 19명, 아르메니아 12명, 에리트레아 10명, 터키 6명, 투르크메니스탄 4명, 아제르바이잔 1명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 동안은 교도소 바깥 청소를 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는데, 제가 일할 당시 그 청소팀에 만기가 1년 9개월이나 남은, 갓 2년 형을 선고받은 병역 거부자를 배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군 복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그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 때문에 더욱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일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음을 교도소 당국이 인정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사술(詐術)을 쓰는 일 없이 제 발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여 처벌해 달라고 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방부, 병무청 관계자 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 인디애나 퍼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플로리다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중에 자신의 양심적 입장을 밝히고 현행법에 따른 사법적 조치에 기꺼이 응하기 위해 입국하여 3년 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그 수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병역을 거부하려는 청년들을 특별히 복지가 필요한 분야에 배치한다면 별다른 감시가 없이도 고역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대만의 사례가 그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거부자들의 성실한 생활 자세를 높이 평가한 미국에서는 병역 거부자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시민권자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유사시 국가를 위해 무기를 들겠다'는 서약을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조항으로 고쳐 선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¹⁴⁾

▪ 대체복무제도의 성격

사회 복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체복무 숫자를 유지해 온 독일을 제외하고 대체복무 제도를 운영해 온 모든 나라에서 대체복무 이용자 수는 소수입니다. 독일을 포함해서, 대체복무 이용자 수는 국가의 정책 의지와 관련된 문제일 뿐입니다. 즉 대체복무 인원이 더 필요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역무의 난이도를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이 신청하도록 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의 과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후자와 같은 사례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아울러 대체복무가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급증했다거나 신종 종교가 생겼거나 혹은 군종(軍宗)을 하고 '호국'이나 '정의로운 전쟁론' 등을 말하는 기성 종교인들의 병역 거부가 급증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독교 내지 가톨릭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로서 대체복무제도를

14) 부록 자료7 참고. 미국 이민국의 귀화지침서 28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식으로 몰아붙여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체복무 제도는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처럼 관용, 융통성,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기초 군사 훈련도 빠지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단 실제로 예비군에 동원되는 시간(총 200시간 내외)과 기초 군사 훈련 시간을 대체복무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 병역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수행자 가족 모임 대표로서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또한 이 법안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병역거부 수행자와 그 가족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만 은혜와 관용이라는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 점에 대해 좀 더 진술하고자 합니다.

● 징벌적 성격의 복무 기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징벌적 기간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고집하기보단 대체복무 제도에 사람이 물리지 않음으로 인해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대만의 사례 등을 참고하는 것이 더 아량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즉, 복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대신에 대체복무 인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부작용 시 자동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취소되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이 법의 관용적인 측면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민간인 신분의 보장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준 가운데 국방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전담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병역법 제 25조에서 '대체역 복무 기간에는 현역 군인의 신분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신념을 온전히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결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전시(戰時)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남북전쟁, 제1, 2차 세계 대전, 베트남 전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¹⁵⁾ 안보 환경이 많이 변한 21세기 한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법정 최고형은 3년이고 해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속절없이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과연 어느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의 병무청장 격이었던 허쉬 장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여부는 미국 민주주의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복무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다양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자료

1. 사상회보 (1940.9) 표지 및 2면
2. 경향신문 해외화제 (83.3.14)
3. 한국일보 지평선 (63.5.30)
4.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발생 추이
5. Milo Kominek, *Even under the Sky There is Hell*, NH, (1971), p.117.
6.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종교적 배경
7. 미국 이민국의 귀화 지침서 표지 및 28면
8. 미국에서의 병역 거부 인정 역사 약술 자료

15) 부록 자료8 참고. 미국에서의 병역 거부 인정 역사 약술 자료

자료5. Even under the Sky There is Hell 표지 및 117면

"I will always remember with admiration and recognition Jehovah's witnesses, mostly young boys, who refused military duty and were condemned for it. Even here they remained in their faith . . . and they refused to work in uranium mines. Commanders of the camps used everything they had at their disposition to force them to do the work, but everything they tried was in vain; most of them would rather die than work in building the Soviet atomic threat. The chief of the camp Palacek made them stand for days in front of headquarters in snow drifts in the -30 C. winter weather pouring water on them till they were frozen. It was a terrible sight, which will haunt me till I die."

"나는 앞으로 두고두고 감탄과 경의를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이 청년들로서 군복무를 거부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도 믿음을 고수하였다. ... 그들은 우라늄 광산에서 작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수용소의 지휘자들은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였지만, 그들의 시도는 허사였다. 그들은 대부분은 소련 원자력 무기 생산을 위해 일하느니 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였다. 수용소 소장 '팔라체크' 는 겨울철 눈보라가 치는 섭씨 영하 30도의 혹한에 그들을 본부 건물 앞에 여러날 세워놓고 동사할 때까지 물을 끼얹었다. 그것은 실로 참혹한 광경이었으며,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U TĚM KOMINOVĚ V TORONTE.
 Je Peto, - nestráti se v Kanadě a jít do armády. V téh je Peto, ne
 Cokoliv ruka a na to nepomoci. Ten myslí je jít do
 armády, "politický akce", bojovat se šikou proti svobodě,
 i nezdravě občanských svobod "Náše klauzura" ...

MILO KOSINEK
**I POD OBLOHOU
 JE PEKLO**



TORONTO, ONTARIO, CANADA -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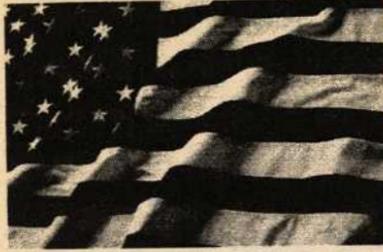
PROPERTY OF THE
 WATCHTOWER SOCIETY
 Not to be taken
 from the
 BETHEL LIBRARY

자료6.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종교적 배경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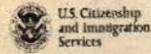
분류 ¹⁷⁾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	비율 (%) ¹⁸⁾
'전통적 평화 교회' (58.1%)	메노파	4,610	38.4
	형제단	1,468	12.2
	퀘이커 교도	902	7.5
'평화주의자 그룹' (5.5%)	여호와의 증인	532	4.4
	Christadelphians	136	1.1
'주류' 개신교 (16.7%)	감리교	845	7.0
	침례교	243	2.0
	장로교	235	1.9
	그리스도 교회	220	1.8
	조합교	204	1.7
	하나님의 교회	154	1.3
	루터교	124	1.0
가톨릭 (1.4%)	가톨릭	162	1.4

16) Karl D. Nelson, *By Reason of Religious Training and Belief*, Religious Response to Conscientious Objection.
 17) 당시 12,000여명의 전면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가운데 100명이 넘는 그룹들만 인용한 Karl D. Nelson은 1) '전통적 평화 교회', 2) 더 작은 '평화주의자 그룹', 3) 주류 개신교, 4) 로마 가톨릭의 순으로 위와 같이 분류를 하였다.
 18) 12,000명에 대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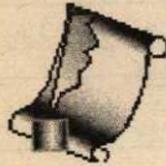
부록7. A Guide to Naturalization



A Guide to Naturalization



Attachment to the Constitution
All applicants for naturalization must be willing to support and defend the United States and our Constitution. You declare your "attachmen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Constitution when you take the Oath of Allegiance. In fact, it is not until you take the Oath of Allegiance that you actually become a U.S. citizen.



What does the Oath require? When you take the oath, you must promise to do three things.

(1) I Will Renounce Foreign Allegiances. As stated in the Oath, you must renounce all foreign allegiances to become a U.S. citizen.

(2) I Will Support the Constitution. You must also be willing to support and defend the principles of the U.S.

The Oath of Allegiance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I
have heret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at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same;
that I will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noncombatant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work of national importance under
civilian direction when required by the law; and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so help
me God.*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3) I Will Serve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law, you must be willing to (1) fight in the U.S. Armed Forces, (2) perform non-combatant service in the U.S. Armed Forces, and (3) perform civilian service for the United States.

What if I am against fighting in the military because of my beliefs? If, because of your religious teachings and beliefs, you are against fighting or serving in the military, USCIS may exempt you from these requirements. You will need to send a letter with your application requesting a modified oath and explaining why you are unable to take the Oath as it is written above. Please see page 39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is process.

What else will USCIS consider about my promise to serve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your promise to serve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USCIS also considers the following three things when determining if you are truly willing to serve the United States:

(1) Selective Service — If you are male, you generally need to register with the Selective Service before applying for naturalization. If you are male and lived in the United States (in any status other than as a lawful nonimmigrant) at any time between your 18th and 26th birthdays, you must be registered with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If you are male and entered the United States after you turned 26 years old, you do not have to register with the Selective Service.

부록 8. 미국에서의 병역 거부 인정 역사 약술 자료¹⁹⁾

- 독립 전쟁 조지 워싱턴 장군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관용 사례
- 남북 전쟁 남북 양 진영 모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적 마련: Federal Militia Act (1862년) 등
- 제1차 세계 대전 '전통적 평화주의' 교회에 국한 (Selective Service Act, Draft Act)
- 제2차 세계 대전 일반 교회로 확대
- 1965년 Seeger 사건 '비정통' 종교로 확대
- 1970년 Welsh 사건 일반인에게로 확대

¹⁹⁾ Suzanne Freedman, *Clay v. United States*, (Enslow, 1997), pp.20-43.

정 창 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의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려는 이유로 징동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전쟁일상 병역거부 중의 최고 처벌받고 있어 이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더라도 이들의 사상 또는 신념을 고려한다면 전무상황에서 실제 임무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이들에게 징동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병역대체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2) 주요내용

-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둔(안 제43조의3 신설).
- 2)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장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양심적병역거부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서 병역거부자의 인정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안 제43조의4).
- 3)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교육적인 사회복지요원으로 전입하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 4)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 치료 요양 자활 또는 상담 등의 임무를 보조 지원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병역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 진술안

정창인 박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1.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가. 임종인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병역기피 등의 죄로 처벌받고 있어 이로 인해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더라도 이들의 사상 또는 신념을 고려한다면 전투상황에서 실제 임무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이들에게 집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병역대체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2) 주요내용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둠(안 제43조의3 신설).
-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양심적병역거부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안 제43조의2).
-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 치료 요양 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집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시근로소집의 의무만을 지도록 함(안 제43조의10 신설).
- 사회복지요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아래 단체숙박생활을 하도록 함(안 제43조의11 신설).
-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부칙②).

나.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또는 여성 등의 보호 치료 요양 훈련 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또는 소방 의료 재난 또는 구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안 제2조 제1항 제9호의2).
- 대체복무요원의 판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3조의2).
-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 산하의 지방위원회에 대체복무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33조의12①).
-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도 제1항에 정한 기간에 불구하고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33조의12②).
- 대체복무신청인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로써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비집총복무결정)하여야 하고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33조의14④).

- 대체복무요원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여야 함(안 제32조의22①).
-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은 제33조의16에 의하여 선정된 대체복무분야에 대체복무요원을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그 복무 및 복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대체복무시설등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안 제33조의23①). 대체복무요원은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 하에 군부대외의 시설에서 단체숙박생활을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 자택 또는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별 또는 소규모의 숙박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2. 개정 법률안 평가

가. 총론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허구성

- 두 개의 개정 법률안이 모두 제안이유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 또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대체복무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됨.

가) 종교적 신념의 허구성

-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로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됨. 한국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실천하고 있는 종교집단은 기독교 내에서도 특정 종파, 즉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한정되어 있음. 이는 그들의 주장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교파의 교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이들의 주장을 '종교적 신념'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함. 특히 동일하게 평화나 불살생을 추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들 특정 종파의 주장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헌법적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특정 종파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 헌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임에도 특정 종교의 신도들에게 집합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특권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원칙에도 위배됨. 따라서 어떻게 보아도 특정종교의 교리에 바탕을 둔 병역거부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수는 없음.

나) 양심적 확신의 허구성

- 소위 양심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역시 양심적 자유권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됨.
- 자연인 개인에게 보장되는 자유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권리로서 헌법을 떠나서는 보장될 수 없음. 다시 말해 한국인이 한국 헌법의 규정을 떠나 미국 헌법을 근거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음.
- 한국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는 그것이 내면에 머무는 한 보장되는 권리이지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국방의무의 분담을 거부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헌법상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사유로 사용될 수 없음.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의무이므로 헌법이 존속해야만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는 국방의무의 종속적 권리로 보아야 마땅함. 다시 말하면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나라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양심의 자유에 우선하는 의무임. 즉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는 상호 충돌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이지만, 법논리상 병역의 의무가 우선적임.
-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평화주의”는 특정 개인의 확신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인류보편적 가치이며, 따라서 이는 특정 개인의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 이용될 수 없음. 설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들일지라도 이러한 ‘양심적 확신’을 가지고 있음.

다) 대체복무의 허구성

- 두 개의 개정 법률안이 모두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안에 규정된 ‘대체복무’는 사실상 병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 ‘면제’를 요구하는 것임.
-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의무로서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 따라서 병역 이외의 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괴변에 불과함.

- 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 치료 요양 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업무를 병역의 대체 업무로 의제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논리적 설득력이 없음.
- 특히 이들에게 전쟁 중에도 국가를 위해 나가 싸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서 이들이 외국인과 다름없이 국민이기를 포기한 것과 동일함.

2) 병역법 개정 법률안으로서 부적합성

-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법률이며 따라서 사실상 병역의 면제자에 대한 복무규정을 삽입하면서 이를 병역법 개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합함.

나. 각 법률안의 평가

- 위 총론적 평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종교인 또는 개인에 대해 헌법적 의무인 병역을 면제해주는 병역법 개정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지만, 법률안으로 제출되어 검토함.

1) 임종인의원 대표발의안

- 병역거부자의 명칭을 “사회복지요원”으로 하여, 이들이 병역과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명칭 자체에서 보여 주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업무가 과연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통상적인 판단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를 국방업무의 한 업무분야로 간주하는 것은 ‘국방’의 뜻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없음.
- 사회복지요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사실상 이들이 국방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규정을 병역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비논리적임.
- 사회복지요원은 그 복무시간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아래 단체숙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과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병무청장이 지휘 감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또한 사회복지요원이 일체의 개인화기를 소지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규정을 병역법에 삽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